

1. 개정이유

군무원인사법 제7조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9호 개정
에 따라 타인의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
경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확인하는 절차를
구체화한다.

2. 주요내용

가.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응시 구비서류 추가(안 제19
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에 제4항)

- 1) 안 제19조제3항제3호 “군 경력증명서 1통(법 제7조제2항제9호에
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.)”를 신설한다.
- 2) 안 제19조 제4항 “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
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3호의 서류뿐만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
칙 제53조3의 행위를 한 군인(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)임을 증명할
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”를 신설한다.

나.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를 서류전형시험위원이
확인하는 절차 마련(안 제20조)

- 1) 안 제20조 제1항 “영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
한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 제53조의3 제1항
및 같은 조에 제2항을 적용한다.”를 신설한다.

2) 안 제20조 제2항 “서류전형시험위원은 제1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에 제4항의 서류를 통해 전투경력, 명예로운경력 및 상훈사항 등을 확인한다.”를 신설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6.23. ~ 7.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군 경력증명서 1통(법 제7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.)

④ 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3호의 서류뿐만 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3의 행위를 한 군인(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)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 (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 확인) ① 영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 제53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에 제2항을 적용한다.

② 서류전형시험위원은 제1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에 제4항의 서류를 통해 전투경력, 명예로운경력 및 상훈사항 등을 확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응시 구비서류) ① (생략)	제19조(응시 구비서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삭제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(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	1. · 2. (현행과 같음)
1. · 2. (생략)	3. <u>군 경력증명서 1통(법 제7조 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.)</u>
<u><신 설></u>	4. (현행과 같음)
4. (생략)	④ <u>법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3항제3호의 서류뿐만 아니라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3의 행위를 한 군인(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)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관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(현행과 같음)
⑤ (생략)	<u>제20조 (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의</u>
<u><신 설></u>	

확인) ① 영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「군인사법 시행규칙」 제53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에 제2항을 적용한다.

② 서류전형시험위원은 제1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에 제4항의 서류를 통해 전투경력, 명예로운경력 및 상훈사항 등을 확인한다.